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
지원에 관한 조례안
(김진천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-147 |
|----------|-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. 10 . .
발 의 자 : 김진천, 강명숙, 권영숙,
김영미, 이민석, 이필레,
정혜경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사업 및 예산의 지원(안 제5조)
- 라. 자립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6조)
- 마. 자립지원협의회 설치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기타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·제38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
- 나. 입법예고 : 2020.10.15.~10.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퇴소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.
2. "보호조치 종료 아동"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.
3. "퇴소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퇴소아동,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퇴소청소년(이하 "퇴소청소년 등"이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퇴소청소년 등의 주거안정 지원사업
 2. 퇴소청소년 등의 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사업
 3.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(금융 컨설팅)
 4. 인성교육 지원사업
 5.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
 6. 정서적·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
 7.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
-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자립지원센터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·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)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, 시민단체, 공공기관 및 아동·청소년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-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"특별지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-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
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사업 및 예산의 지원(제5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이교영 |
| 연 락 처 | 02-3153-8993 |